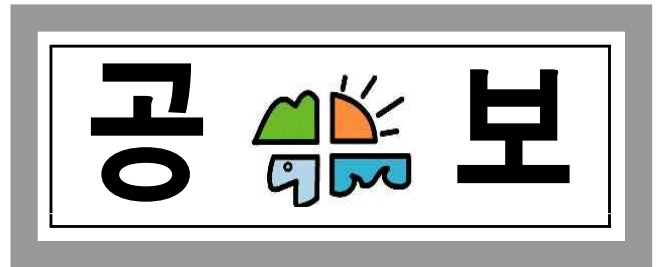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744호 2013년 1월 3일(목)

공 고

○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..... 2

회 란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공 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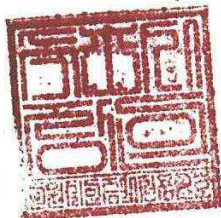
속초시 공인조례 및 속초시수입증지조례 제4조의2 제③항 및 제4조의3 제③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(인증기) 사용에 관한 사항, 제9조(공고)의 규정에 의거 신조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1월 3일

속 초 시 장

1. 공인 신조 및 폐기 사유
— 인증기 교체

2. 신조 공인명 및 인영 : 신조 2개, 폐기 2개

구분	공 인 명	인 영	서체 및 규격	최초사용/폐기 년월일	인증기계기번호
신조	속초시장인 민원실인증기전용1호 (민원행정담당)		한글전서체 가로(3.0cm)× 세로(3.0cm)	2013. 01. 04.	F21212353
신조	속초시장인 민원실인증기전용2호 (민원행정담당)		한글전서체 가로(3.0cm)× 세로(3.0cm)	2013. 01. 04.	F21212352
폐기	속초시장인 민원실인증기전용1호 (민원행정담당)		한글전서체 가로(3.0cm)× 세로(3.0cm)	2002.02.25 (2013. 01. 04.)	F2207579
폐기	속초시장인 민원실인증기전용2호 (민원행정담당)		한글전서체 가로(3.0cm)× 세로(3.0cm)	2002.02.25 (2013. 01. 04.)	F2502118